

제4호

행정명령

뉴욕주의 의료진 인력난으로 인한 뉴욕주 재난 비상 사태 선언

현재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인력난은 치료 서비스 제공 능력에 영향을 주고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의 심각한 인력난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을 올바르게 돌보는 병원의 기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의료 시설이 제역할을 하려면 즉각적으로 직원을 총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저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의거 행정법 제2-B조 28항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방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재난이 뉴욕주에 임박했다고 판단되므로, 본인은 뉴욕주 전역에 재난 비상 사태를 선포합니다. 이 행정 명령은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행정법 제2-B조 29항에 따라 본인은 뉴욕주 종합 비상 관리 계획을 실행하도록 명령하며 공중 보건, 복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 정부 및 개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정부 기관이 허락합니다.

추가로, 주 재난 비상 사태 발생시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특정 기관의 규정이나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행정법 제2-B조 29-a항에 따라 그러한 법규,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특정 기관의 규정이나 그 일부를 유예 또는 수정하도록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 행정 명령 발표일로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을 유예 또는 수정합니다.

- 교육법 6512항에서 6516항, 6524항, NYCRR 8조 60절.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주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가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락하고, 캐나다 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승인한 국가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사가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502항 및 NYCRR 8조, 59.8항.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주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지만 뉴욕주에서 의사로 등록되지 않은 의사가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512항에서 6516항, 6905항, 6906항 및 6910항, NYCRR 8조 64항. 전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실무 간호사, 면허를 가졌으며 미국의 주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개업 간호사가 뉴욕주에서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전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실무 간호사, 캐나다의 주나 영토 또는 보건부가 승인한 기타 국가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개업 간호사 또는 면허를 가진 유사한 직위를 사람이 뉴욕주에서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512항에서 6516항, 6541항, NYCRR 8조의 60.8절.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주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 보조원이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뉴욕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락하고, 캐나다 또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승인한 국가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 보조원 또는 유사한 직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가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뉴욕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 공중 보건법 제3502항 제3505항 및 NYCRR 10장 89절. 현재 미국의 주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사선학 기술자가 뉴욕주에서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제8502항, 8504항, 8504-a항, 8505항, 8507항 및 NYCRR 8장 79-4절. 현재 미국 다른 주의 적법한 일원이지만 뉴욕주에서 치료 행위를 하도록 뉴욕주에 등록하지 않은 양호한 자격을 갖춘 호흡 치료사가 뉴욕주에서 면허 부재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512항부터 6516항, 8510항 및 NYCRR 8장 부속절 79-4. 현재 미국 다른 주의 적법한 일원이지만 뉴욕주에서 치료 행위를 하도록 뉴욕주에 등록하지 않은 양호한 자격을 갖춘 호흡 치료 전문인이 뉴욕주에서 면허 부재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제6502항 및 8 NYCRR 59.8. 면허를 가지고 뉴욕주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 보조원, 전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실무 간호사, 개업 간호사가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뉴욕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현재 제약이 없는(unencumbered) 면허를 가지고 뉴욕주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전문보조원, 호흡 치료사, 호흡 치료 기술자, 약사, 임상전문간호사, 치과 의사, 치위생사, 공인 치과보조사, 조산사, 체외순환사, 임상병리사, 세포 검사 기사, 공인 임상병리사, 공인 조직학 기사, 임상사회복지사, 전문사회복지사, 발전문가, 물리치료사, 물리치료보조사, 정신건강상담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창조예술치료사, 정신분석가 및 심리학자가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951항, 6952항, 6953항, 6955항. 미국의 주 또는 캐나다의 지방이나 영토 또는 보건부가 승인한 모든 국가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산사가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 공중보건법 3507항 및 NYCRR 10조, 89항.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주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지만 뉴욕주에서 방사선 기술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512항에서 6516항, 6548항, 6911항 및 NYCRR 8장 60.11항, 64.8항. 뉴욕의 주 또는 캐나다의 도 또는 영토, 보건부가 승인한 기타 국가에서 인증되고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임상전문간호사, 전문 보조원,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위를 가진 자가 뉴욕주에서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512항에서 6516항, 7704항 및 NYCRR 8장 74절. 미국의 모든 주 또는 캐나다의 모든 주나 영토의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임상사회복지사,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무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 미소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 일 없이 의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제6908항 및 관련 규정. 졸업생이 주 교육부(Education Department)에 임상간호사 증명서 신청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주 교육부 공인 면허부여 자격 임상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졸업생이 뉴욕주 공인 면허부여 자격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즉시 병원 또는 양로원에서 간호 행위를 하도록 180일간 고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제8609항 및 관련 규정. 졸업생이 뉴욕주 임상실험기사 면허 및 제한된 허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주 교육부 공인 면허부여 자격 임상실험 기술 및 임상병리사 교육 프로그램의 졸업생이 뉴욕주 공인 면허부여 자격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즉시 적절한 뉴욕주 허가를 받은 임상실험실에서 18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제6907조 제5부속조항 및 관련 규정. 뉴욕주 교육부(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에 등록되었으며 자격을 갖춘 실무 간호 교육 프로그램의 등록 전문 변호사 및 면허 실무 변호사 졸업생이 등록 전문 간호사의 감독 하에 졸업 180일 직후 병원이나 양로원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 교육법(Education Law) 6524항, NYCRR 8장 60.7항, NYCRR 제10장 부속조항 (g) 405.4 (1)절. 의학 교육 연락 위원회(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 또는 미국 접골 연합(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으로부터 의학 교육에 대한 교육 인증을 받았거나 의학 대학 교육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2021년 또는 2022년 졸업하는 의사가 뉴욕주 또는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면허를 가진 의사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512항부터 6516항, 6524항 및 NYCRR 8장 60부. 2021년에 뉴욕주에 있는 등록 또는 공인된 의료 프로그램을 졸업한 자가 이러한 졸업생의 의료 행위가 언제나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등록된 의사에 의해 관리 감독 받는다면 무면허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뉴욕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비상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이 해당 조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에서 퇴직 및 사회보장법(Retirement and Social Security Law) 제212조,
- 공중보건법 2805-k항, NYCRR 10장 405.4절, 405.5절, 405.9절, 405.14절, 405.19절 및 405.22.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갖추고 공중보건법의 해당 항 및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의 해당 항을 준수하며, 해당 주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다른 주의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과 신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 공중보건법 30조. EMT 및 Advanced EMT가 업무 범위 내에서 현재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응급 및 비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 NYCRR 10장 800.3항 세칙 d 및 u. 응급 의료 서비스 요원이 지역사회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안적인 목적지로 이동하거나, 환자 치료를 용이하게하기 위한 원격 진료, 기타 보건부 커미셔너가 승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 공중보건법 3001항 세칙 (7) 및 NYCRR 10장 800.3항 세칙 (p)항. 자격을 갖춘 응급 의료 전문가-긴급 의료원이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역사회 긴급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면허를 가진 의사의 의학적 지시 하에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이 경우, 응급 의료 서비스는 보건부 커미셔너가 정한 조건에 먼저 부합해야 합니다.
- 교육법 6951항 및 NYCRR 8장 79-5.5항. 이러한 조항이 정상적인 임신, 출산 및 산후 치료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건강한 여성의 기본적 임신 관련 건강 관리, 신생아 검사, 유아 소생 및 위탁을 제한하고, 또한 이러한 조항이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병원과 협력하여 활동하는 조산사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본 재난 비상 사태의 목적에 한하여 조산사가 뉴욕주 보건부 또는 지역 보건부의 감독 또는 승인을 받으며 면허를 가진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보조원, 또는 공인 간호사의 의료 감독 하에서 운영되는 장소에서 비환자 특정 처방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까지. 이 경우, 교육부에서 면역 체제 주사를 위해 발행한 인증서가 없는 조산사는 보건부 커미셔너가 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교육법 139장, 공중 보건법 576-b항, NYCRR 10장 58-1.7항. 면허가 있는 간호사가 목이나 비강 스왑을 통해 코로나19 의심환자로부터 표본을 채취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902항 세칙 1, 6909항 세칙 4, 5, 7, 교육법 6527항 세칙 6, 7, NYCRR 8장 63.9항 및 64.7항. 의사 및 공인 간호사가 간호사 또는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사람에게 비 환자 특정 처방을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혹은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1) 목이나 코에서 코로나19 감염의심자로부터 샘플을 테스트 목적으로 채취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고, (2) 급성 또는 과거 코로나19 질환 진단을 위한 혈액 표본을 수집, (3)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행 자문 위원회의 가장 최근의 권고 및/또는 해당 미국 식품의약청 승인 또는 비상 사용 허가의 최신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 또는 (4)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면허가 있거나 전문 간호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범위의 의료 행위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521항 및 6902항, 교육법 6909항 세칙 4, 5, 7, 교육법 6527항 세칙 6, 7, NYCRR 8장 63.9항 및 64.7항.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기타 면허가 있거나 법적 자격을 갖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교육법 139조에 따라 처방한 의료 요법을 전문 간호사가 수행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건부 커미셔너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간호사 이외의 직원이 다음의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는 범위까지, (1) 검사 목적으로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개인으로부터 적용 가능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후, 비강 또는 비 인두 면봉 표본을 수집, (2) 급성 또는 과거 코로나19 질환 진단을 위한 혈액 표본을 수집, (3)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행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for Immunization Practices, ACIP)의 가장 최근의 권고 및/또는 해당 미국 식품의약청 승인 또는 비상 사용 허가(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의 최신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접종 실시, (4)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호사의 감독 하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면허가 있거나 등록된 간호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범위의 의료 행위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 NYCRR 10장 405.3항 세칙 (b). 일반 병원에서 자격을 갖춘 자원 봉사자 또는 보건부 커미셔너가 지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다른 종합병원과 관련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NYCRR 10조 400.9항 및 405.9항 세칙 h, 7단락. 공공보건법 제28조에 근거하여 면허를 받은 일반 병원 및 양로원이 비상 상태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보건 커미셔너의 승인에 따라 이러한 환자들을 배치, 이송, 접수하고 해당 시설이 안전한 이송과 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환자 및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원 부족으로 필요하다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응급 의료 및 노동법(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 (42 U.S.C. 제 1395dd)) 및 기타 연관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범위까지,
- NYCRR 8장 64.7항. 관동맥 증후군의 증상을 위한 심전도(EKG), 정신 상태 변화를 위한 혈당, 잠정적 패혈증을 위한 검사 및 정맥 주사선, 평가 및 진단을 단축하기 위한 시술전 임신 검사 등을 포함한 간호사가 실시하근 프로토콜을 확장하는 범위까지,
- NYCRR 10장의 415.15항. 영양원 입주자를 위한 의사 방문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 NYCRR 10장의 405.13항 및 755.4항. 마취학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가졌으며 숙련된 등록 간호사가 이러한 치료 환경에서 자격을 갖춘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일반 병원 또는 자립 외래 수술 센터에서 마취를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NYCRR 10장 800.3항, 800.8항, 800.9항, 800.10항, 800.12항, 800.17항, 800.18항, 800.23항, 800.24항, 800.26항. 연장하고, 보건 커미셔너가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인증에 대한 검사 또는 재인증 요건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건부 커미셔너의 재량에 따라 과거 인증을 받은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재인증 요건을 일시 중단 또는 수정하고, 보건부 커미셔너의 재량에 따라 보건부가 결정한 프로세스를 개발하며, 다른 주에서 인증을 받은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뉴욕주 내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며, 보건 커미셔너의 재량에 따라 응급 의료 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 EMS)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 또는 차량 요구 사항을 일시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NYCRR 10장의 3001항 세칙 (15), 800.3항, 800.15항, 800.16항. 보건부의 승인 하에 지역 또는 주정부 의료 관리 센터가 모든 비상 치료 서비스 인원에 대해 내리는 응급 및 비응급 지시를 포함하도록 의료 관리"를 정의하고 응급 의료 서비스 인원이 간호사, 의료 보조원, 응급요원이 의사의 감독에 따르며 보건부가 승인한 계획에 따라 치료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공중보건법 3001항, 3005-a항, 3008항, 3010항. 응급, 비응급 및 저시력 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응급 의료 서비스"의 정의를 수정하고, 승인 받은 구급차 서비스 또는 외부 사업자가 이러한 구급차 서비스 등록 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승인한 기본 서비스 지역 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며, 보건부 커미셔너가 비상 치료 서비스 제공 승인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승인받은 변경 등록을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고, 보건부가 사전 승인한 치료 시설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권한을 응급 치료 서비스에 부여하는 범위까지,
- 교육법 6502항, 6524항, 6905항, 6906항, 6910항, NYCRR 8장 59.8절. 면허를 가졌으며 미국의 주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고 있지만 뉴욕주에 등록하지 않은 퇴직 의사, 전문 간호사, 면허를 가진 실무 간호사가 뉴욕주가 마련한 자동 등록 양식을 사용하여 재등록하고 3년마다 하는 등록 기간에 등록자에게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는 범위까지,
- 교육법 6542항 1절, 6549항 1절 및 NYCRR 10장 94.2항 세칙 (a) 및 (b). 상급 의사의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한 민형사 상의 처벌 위험 없이 상급 의사의 감독을 받지 않은 의료 보조원 및 전문의 보조원이 교육, 훈련, 경험에 맞추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제6902항의 부속조항 (3) 및 NYCRR 10장의 64.5절, 기타 NYCRR 10장 64.5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규정. 간호사 개업자가 서면 치료 합의나 의사와의 협업 부재와 관련된 민형사 상의 처벌 위험 없이 서면 치료 합의, 의사와의 협업을 하지 않고 교육과 훈련 및 경험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10 N.Y.C.R.R. 405.4항의 세칙 (g) (2)단락의 하위조항 (ii). 해외 의과대학 본과를 1년 이상 수료한 학생이 면허 없이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Education Law) 제6909조 세칙 4항과 교육법 제6527조 세칙 6항,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 8장 제64.7조. 의사 및 공인 간호사가 간호사 또는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사람에게 비 환자 특정 처방을 발급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혹은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목이나 코에서 코로나19 감염의심자로부터 샘플을 테스트 목적으로 채취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감염의심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데 필수적인 범위에서,
- 교육법 제8602조 및 제8603조, NYCRR 10장 제58-1.5조. 연방 고복잡성 검사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수집한 샘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를 검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제165조 및 뉴욕 법률, 규정 및 규칙 10장의 제58-1.3항. 감독자가 현장에 최소 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임상실험기사가 원격 감독하에 임상실험실에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허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 6530절 하위절 32, NYCRR 8장 29.2절 하위절 (a), (3) 단락, NYCCR 10장 58-1.11항, 405.10 및 415.22절. 보건부 또는 교육부가 부과한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이 없이 진단 코드를 지정하거나 다른 청구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록 보관 요건을 해제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 현행 헌법 제V조 제1항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그리고 공공 건물 법(Public Building Law) 제3조에 따른 재배치 및 임대료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계약에 추가 작업, 부지, 시간을 추가하거나 긴급 계약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뉴욕주 재무법(State Finance Law) 제112조, 공공건물법 제9조에 따른 긴급 계약, 뉴욕주 금융법 제136-a조에 따른 긴급 계약, 뉴욕주 금융법 제163조에 따른 전문 서비스 긴급 계약, 연방 일반서비스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일정과 연방 1122 프로그램 혹은 기타 주정부, 지역, 로컬, 다중 관할, 협력 계약책을 통한 소비재, 상품, 기술 구매 긴급 계약,
- 주 재무법 163항, 경제개발법 4-C장. 필요한 서비스, 상품, 기술 계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까지,

- 보험법 4903항, 공중 보건법 4903항. 행정 명령 심사 기간에 병원에 예약된 수술, 병원 입원, 병원 외래환자 서비스, 퇴원 후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 입원 후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재활 서비스 등에 대한의 사전 심사를 위한 요건을 유예하고, 현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서비스의 동시 심사를 유예하고, 네트워크 소속 병원에서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서비스의 소급적 심사를 유예하여 병원이 건강보험에 인증할 경우 의료진의 가용성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 보험법 4904항 하위절 c, 4914절 하위절 b, 1단락, 공중보건법 4904항 하위절 3, 공중보건법 4914항 하위절 2, a 단락. 행정 명령 심사 기간에 의료진의 가용성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내부 및 외부 이의제기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범위까지,

2021년 9월 2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